大田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597

提出年月日: 1995年 6月 1日

提 出 者:議會運營委員長

1. 提案理由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95. 4. 1 개정)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정수가 현행23명에서 비례대표 의원3명이 증원되어 2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함.(안 제2조)
- 나. 내무위원회 소관에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과 문화관광국을 추가함.(안 제3조)
-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폐지된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을 삭제하고, 신설된 건설교통국을 추가함.(안 제3조)

3. 參考事項(關聯法規)

- 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2조
- 나.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8명"을 "9명"으로, 제3호중 "7명"을 "8명"으로, 제4호중 "7명"을 "8명"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공보관실"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재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각각 삽입하고, 제4호중 "교통관광국"을 삭제하고. "건설주택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	게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7명	1
2. 내무위원회 8명	2 9명
3.문교사회위원회 7명	3 8명
4.산업건설위원회 7명	4 মন্ত্র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상임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경원심	
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내무위원회	2.내무위원회
가.공보관실,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	가.공보관실,국제통상협력실,
개 무국 ,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	재무국,문화관광국,
나.기타 타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나
에 관한 사항	,
3.(생 략)	3.(현행과 같음)
4,산업건설위원회	4.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건설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농촌 지도소	

□ 참고사항

ㅇ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2조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한다. (개정 '95.4.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인 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신설 '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된 의원 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 미만이되는 도는 그 정수를 17인으로 한다. (개정 '94.19.22, '95.4.1)

④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이 경우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 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95.4.1)